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공급망 정보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

박 영 식\*\*  
홍 우 선\*\*\*  
백 강\*\*\*\*

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로 확대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으로서 공급망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선을 제안한다.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3년)에 따라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공급망 관리자로서 구매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 현황과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다자간 성과 공유제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불공정거래 방지책과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급망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급망, 정보인프라, 불공정거래

## 1. 서론: 동반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로 확대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으로서 공급망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선을 제안한다.

경쟁의 양상이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김세중, 2011).<sup>1)</sup>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도 중요

논문접수일: 2015. 11. 25.                      1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3. 10.                      게재확정일: 2016. 03. 24.

\*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방안 - 2차 이하 협력업체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2015.5.7)의 내용을 논문화한 것입니다.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yspark@sogang.ac.kr), 제1저자

\*\*\* NICE정보통신 대표이사(hongws@nicevan.co.kr)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조교수(kbaek@hanbat.ac.kr), 교신저자

1) 김세중(2011)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며,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문성, 박상범, 전인우(2011)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속한 216개 1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간 신뢰와 상생 인프라구축이 상생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어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강맹수, 이근희, 2012).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박영석 외 3인, 2013).

그동안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3년)이 추진됨에 따라 구매기업(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 동반성장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 '9.29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후 3년 간 동반성장 여건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그러나 1차 협력업체보다 2·3차 협력업체에서 동반성장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 성과가 하위 단계까지 온전히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분류에서도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체감하는 동반성장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급망의 하단에 위

치한 중소기업에 특히 동반성장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협력업체의 주요 납품처가 대기업이고 2차 이하 협력업체의 납품처는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혜택은 1차 협력업체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3〉 참조).

동반성장 정책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협력단계별 납품단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5월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납품단가 인상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 결과'에서 하위 협력단계로 갈수록 원사업자의 조정거부 비율이 높고 수용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 참조). 이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의 동반성장 노력이 하위 협력단계로 갈수록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체가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 협력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相異)하다는 것이다. 2015년 4월 「중소제조업 원가절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차 협력업체는 원가절감

〈표 1〉 1, 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08~2013년)의 주요내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1차 기본계획 ('08~'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형 공동 R&amp;D,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 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등 확산</li> <li>•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미활용 특허의 특허신탁제도, 특허기술 경매제도 활성화</li> <li>• 유통·건설 등 취약분야 불공정행위 감시기능 강화, 사업조정제도 기능 활성화</li> </ul> </li> </ul>
2차 기본계획 ('11~'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펀드 조성 및 기술보호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등 동반위 중심 운영</li> <li>•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이행</li> <li>• '동반성장펀드' 신규 조성, 정부 R&amp;D 지재권의 소유 및 배분기준 정비 등</li> </ul> </li> </u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2〉 2010년 대비 3년 간 동반성장 여건 변화 추이(%)

구분		악화	변동 없음	개선	평균	
전체	2011년	9.7	52.3	38.0	105.3	
	2012년	9.7	50.3	40.0	108.3	
	2013년	12.7	45.0	42.3	110.7	
협력 단계	2011년	1차 협력업체	8.9	50.5	40.5	106.4
		2·3차 협력업체	10.9	55.5	33.6	103.3
	2012년	1차 협력업체	8.4	47.4	44.2	109.6
		2·3차 협력업체	11.8	55.5	32.7	106.1
	2013년	1차 협력업체	11.1	40.5	48.4	112.2
		2·3차 협력업체	15.5	52.7	31.8	108.1
업종	2011년	제조업	8.7	57.2	34.1	104.1
		서비스업	10.4	33.3	56.3	110.6
	2012년	제조업	8.7	53.7	37.6	106.5
		서비스업	12.5	37.5	50.0	116.7
	2013년	제조업	12.2	47.6	40.2	107.9
		서비스업	12.5	37.5	50.0	123.3

주: '평균'은 2010년 동반성장 여건을 '100'으로 볼 때, 연도별 동반성장 여건이 10% 개선되면 '110', 10% 악화되면 '90', 변동 없으면 '100' 등으로 기재하여 응답받은 평균값임.

자료: 201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표 3〉 중소기업체 협력단계별 납품처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기타	
전체	34.8	11.7	42.3	5.3	5.9	
협력 단계	1차	61.1	9.1	20.3	4.8	4.7
	2차	31.3	10.8	44.2	7.9	5.8
	3차 이상	13.1	16.1	62.3	1.2	7.3

자료: 중소기업 납품평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5), 중소기업중앙회

〈표 4〉 협력단계별 납품평가 인상 요청 수용 결과(%)

구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원사업자와 합의실패	원사업자가 조정거부	
			수용비율			
전체	9.1	63.0	41.1	16.9	11.0	
협력 단계	1차	12.8	68.1	50.9	12.8	6.4
	2차	10.4	61.2	35.0	19.4	9.0
	3차 이상	2.5	60.0	38.6	17.5	20.0

자료: 중소기업 납품평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5), 중소기업중앙회

(CR)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 '경비절감', '재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하위 협력업체로 갈수록 '노무비 조정(임금삭감, 인력축소, 비정규직 등)', '영업이익으로 원가절감분 충당', '재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전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참조).

이는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적절한 납품단가를 책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 수익성, 인력수급 측면에서 더 쉽게 경영 악순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2차 이하 협력업체에서 재하도급을 통해 하위 거래단계로 원가절감분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해 적정 납품단가를 확보하는 것도 동반성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 현금결제 확대, 결제관행 개선, 성과공유제 도입, 공동사업 추

진 등의 혜택이 2차 이하 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동반성장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을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의 무게중심이 구매기업(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이동하는 '동반성장 사다리' 구축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급망 관리자(supply chain manager)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구매기업이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3차 협력업체 현황이나 공급망 내 기업간 연계 구조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협력업체간 결제방식이나 대금지급, 금융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3차 협력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결제지연, 과소지급, 체불 등의 불공정한 결제 관행

〈표 5〉 협력단계별 원가절감 요구 대응 방법(%)

구분	노무비 조정	경비 절감	재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협력업체에 전가	영업이익으로 충당	기타
전체	14.2	35.0	39.2	41.3	5.0	15.4	2.1
협력 단계	1차	8.1	35.1	45.9	59.5	-	2.7
	2차	14.6	38.4	39.7	37.1	5.3	15.9
	3차 이상	17.3	25.0	32.7	40.4	7.7	23.1

자료: 중소제조업 원가절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4), 중소기업중앙회

〈표 6〉 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의 주요내용

기본계획	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 ('14~'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활용하여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실현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li> <li>• 대기업별 협력업체 자체 선정 방식을 외부에 개방하는 동반성장밸리 구축</li> <li>• 대기업에서 2·3차 협력업체까지 순차적인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li> <li>• 중소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 및 현금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li> <li>• 금융, 디자인, 문화, 물류, IT 등 7대 서비스 분야의 자발적 동반성장 강화</li> <li>•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li> </ul> </li> </u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을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상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 결제 관행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만으로 관행 개선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매기업(대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기업별 결제현황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다면,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동반성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에 이어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정보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4장에서는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개괄한다. 5장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II. 선행연구: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필요성

공급망 내 기업 간 정보 공유가 공급망의 성과를 제고한다는 선행연구는 국·내외에 다수 존재한다

(Larson, 1994; Artz, 1999; Stank et al., 2001; 송장근, 김광석, 2010). 또한 Zhou and Benton (2007)은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통합된 공급망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공급망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Premkumar (2000)은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anchez-Rodriguez et al.(2005)은 공급망 내에서 구매기업과 공급기업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총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송장근 외 3인(2009)에서는 정보공유가 공급망의 경쟁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기술하면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매기업은 공급망 전체의 정보를 관리하고 협력업체간 대금지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급망 내 결제흐름 병목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결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구매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연쇄부실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이하 협력업체도 공급망 전체의 신용에 연계되어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감소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역시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포괄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의 온기가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수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석 외 3인(2013)에서는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 모형과 수치 분석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상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 7〉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기존 동반성장 환경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구매기업 (원청업체)	-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중심 -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 및 원가관리 어려움	- 공급망 전체의 정보 관리,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통해 원가 절감, 중소기업 지원 가능
1차 협력업체	- 원청업체로부터 현금결제 비중 증대 -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 현금결제 비중 등 기존 거래환경 유지 - 전체 공급망 안정에 따른 혜택
2차 이하 협력업체	- 독자적 기술개발, 성과공유의 어려움 - 1차 협력업체의 신용에 연계되어 높은 할인율 및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 존재	- 원청업체의 지원에 따른 기술개발 추진 - 공급망 전체의 신용에 연계되어 낮은 할인율 및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 감소 - 성과공유제를 통한 적극적 기업활동
공급망 전반	- 정보 부족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 체계 - 높은 금융비용 및 연쇄부실 가능성 존재	- 효율적 관리에 따른 금융비용, 연쇄부실 가능성 감소 및 경쟁력 제고
정부	- 1차 협력업체 중심의 한정된 상생정책 실현	-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포괄적 상생정책 효과 및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기대

### III. 공급망 정보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이상에서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자가 공급망 내 협력업체 현황과 결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및 의견을 파악하

기 위해 54개 주요 구매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3.24 ~ 2015.4.5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되었으며, 설문방식은 대면(24건), 유선전화(3건), 이메일(27건)을 이용하였다(〈표 8〉 참조).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요 구매기업(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본정보를 파악(92.3%)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단계의 구매기업도 44.2%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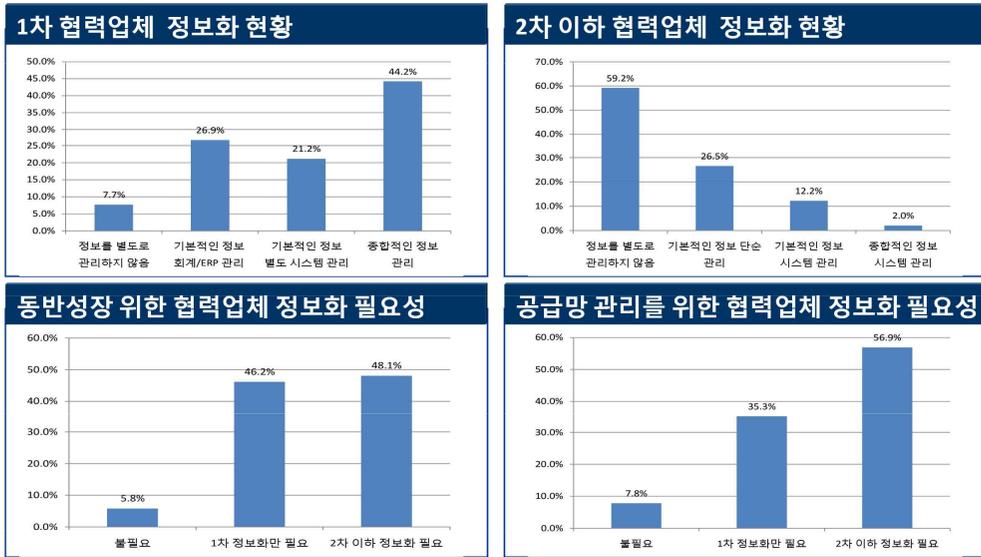
〈표 8〉 주요 구매기업(대기업) 대상 협력업체 정보인프라 설문조사 개요

업종별	설문대상	동반성장 평가대상	설문응답
건설	21	21	11
기계, 자동차, 조선	43	43	7
도소매, 식품	39	38	15
전기, 전자	21	21	10
정보통신	11	8	4
화학, 비금속, 금속	26	25	6
기타	3	-	1
계	164	15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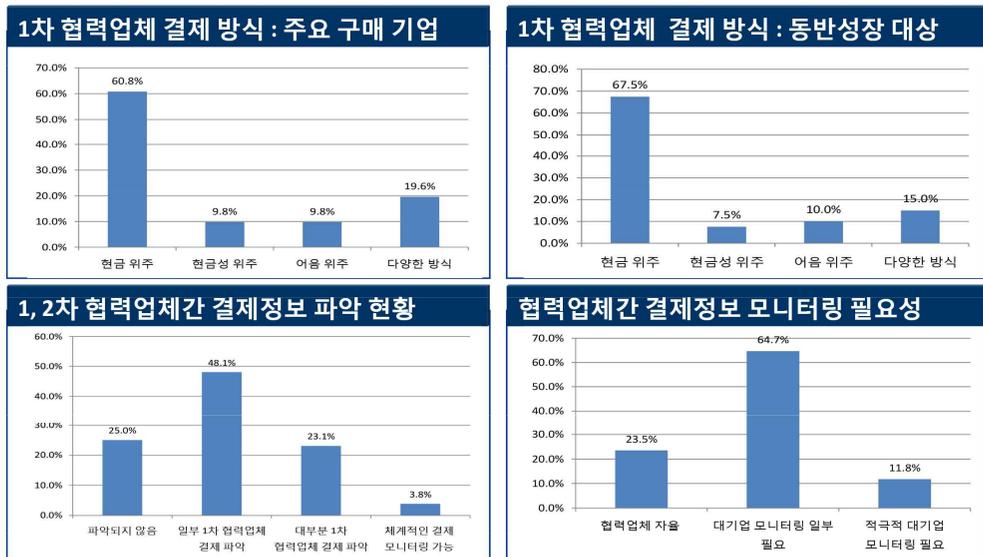
주: 설문기간은 2015.3.24 ~ 2015.4.5(약 2주일)이고, 설문방식은 대면(24건), 유선전화(3건), 이메일(27건)을 이용하였음. 각 기업에서 설문응답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업사업실(30社), 글로벌사업실(5社), 정보사업실(6社), 동반성장사업실(13社)임.

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구매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9.2%)하였고, 기본적인 정보만 단순히 관리한다는 구매기업도 26.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이는 1차 협력업체에 비하여 2

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구매기업의 정보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협력업체 간 결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구매기업



〈그림 1〉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및 의견 조사 결과



〈그림 2〉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 현황 및 모니터링 조사 결과

들은 1·2차 협력업체 간 결제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25.0%) 일부 1차 협력업체에 한해 파악(48.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공급망 내 협력업체 간 결제 모니터링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업체 정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 협력업체 정보화만 필요(46.2%)'하다는 응답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정보화가 필요(48.1%)'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정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1차 협력업체 정보화만 필요(35.3%)'하다는 응답보다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정보화가 필요(56.9%)'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매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 참조). 이는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낮은 정보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보화 수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업체 간 결제정보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자율에 맡긴다(23.5%)'는 응답보다 '구매기업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76.5%)'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 IV.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의 개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협력업체 현황과 결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급망 내 전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품 수급을 비롯한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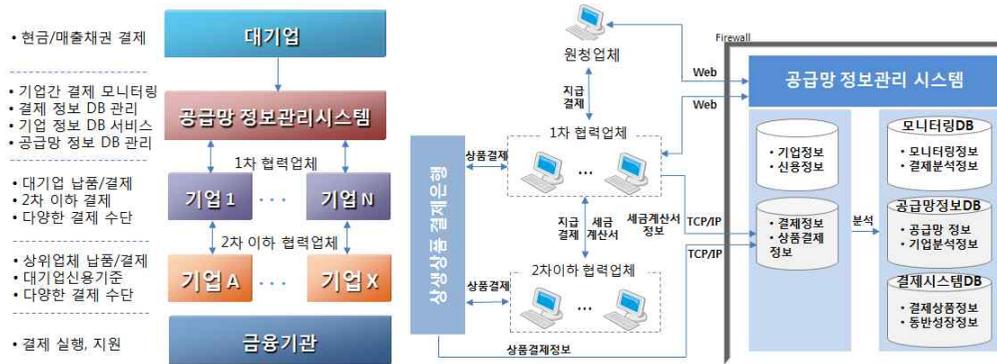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는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시스템, 결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그림 3〉 참조).<sup>2)</sup> 원청업체가 현금이나 매출채권으로 지급결제를 실행하면,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업 간 대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망 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결제 시스템'은 공급망 내 기업 간 대기업 신용도로 하위 거래단계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준다.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을 위해 기업 간 관계 자료 및 개별 기업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은 '정보 시스템'에서 담당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 간 대금

〈표 9〉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모니터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간의 현금, 매출채권 등 결제수단별 비중 현황 및 추이 파악</li> <li>• 협력업체간의 결제대금 지급 기일의 현황 및 변화 추이 파악</li> <li>• 공급망내 결제흐름에서 병목 기업의 사전 파악으로 결제 위험 감소</li> </ul>
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내 기업의 개별 정보와 기업간 연계정보의 효율적 관리</li> <li>• 경영, 재무정보에 기반하여 위험기업 사전파악으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li> <li>• 적합 기업 선정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 가능</li> </ul>
결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결제수단의 통합관리를 통한 결제 모니터링 범위 확대</li> <li>• 계좌관리, 금융기관 연결 등 결제관련 업무 통합지원 가능</li> <li>• 대기업 신용기반의 결제수단 사용 시 협력업체 금융비용 절감</li> </ul>

2)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 구조는 나이스디앤비의 윈크(WinC)시스템을 참조하였다.



〈그림 3〉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 개념도

지급을 모니터링하여 하위 협력업체로의 자금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4〉 참조). 구매기업은 협력업체 간 현금결제 비중, 지급기일 등을 분석하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불공정 협력업체에 대한 패널티(penalty) 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제기한 초과, 결제기간 증가, 장기 미지급, 잔액 미지급 등 공급망 내 자금 흐름의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3)</sup> '정보 시스템'은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전반적인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고 동반성장 업무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표 10〉 참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조에

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구조는 구매기업(대기업)을 정점으로 1, 2차 협력업체의 수직 연결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망 구조는 산업별·기업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 참조).<sup>4)</sup> 따라서 공급망 내 기업 간 연결 정보를 파악하고 1, 2차 협력업체에 대해 구분하여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현금흐름/기타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공급망 하단에서의 동반성장 정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 시스템'은 대기업 신용을 기반으로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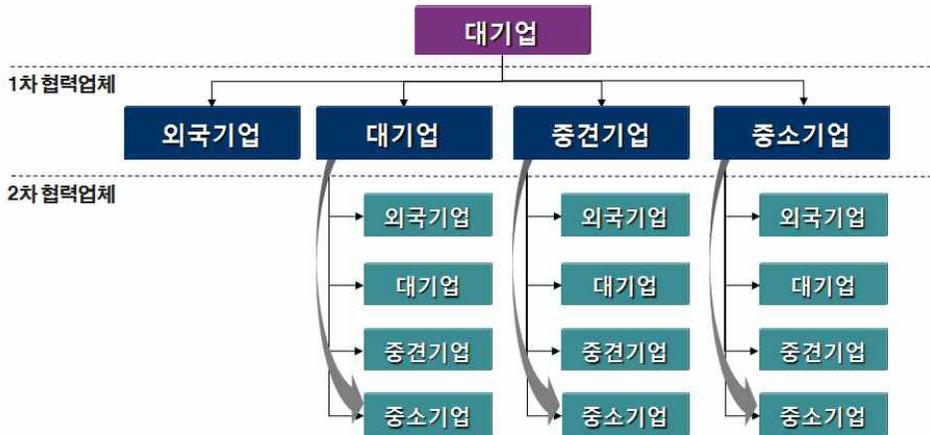


〈그림 4〉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도

3) 박영석 외 3인(2013)에서는 구매기업이 2차 이하 협력기업들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품질향상 유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기대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구매기업의 참여인센티브를 설명하였다.  
4)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관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하위 중소기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표 10〉 정보 시스템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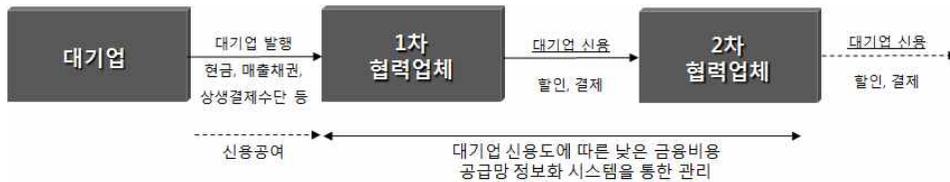
구분	기능
공급망 정보	공급망 내 기업간 연결정보, 1차/2차 등 협력업체에 대한 구분 관리
협력사 기업 정보	협력사에 대한 재무/현금흐름/기타정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 진단
동반성장 정보	동반성장 정책 이행 정보, 협력사간 동반성장 전자협약 등



〈그림 5〉 동반성장 정책 추진 대상 공급망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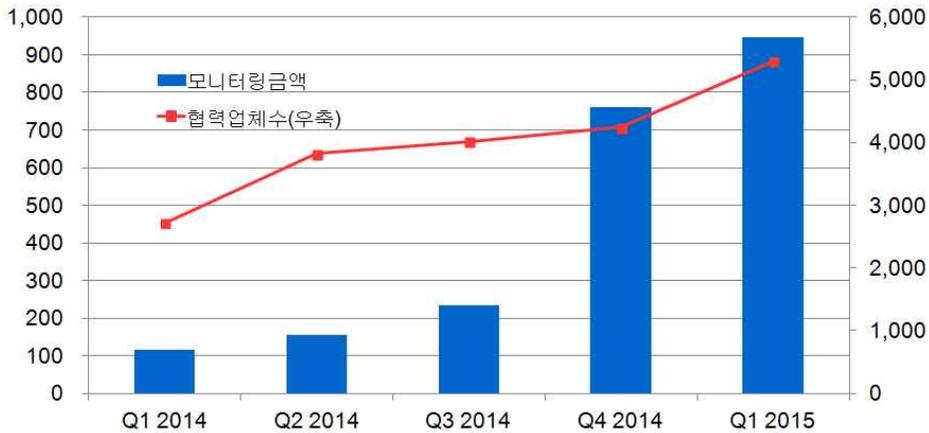
의 할인율을 낮추어 공급망 전반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매출채권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관점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현금, 현금성, 매출채권, 신규 결제금융상품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결제 시스템의 개념도

5)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대기업이 물품 대금으로 1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을 주면, 2차 이하 협력사도 이를 만기에 현금으로 바꾸거나 만기 전에 할인해 현금화 할 수 있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 신용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할인 받기 때문에 대기업과 동일한 저금리 이자가 적용된다(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참조).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 1차 협력사는 4%, 2차는 6.5%, 3차는 9.5%의 할인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었으나, 상생결제시스템 적용으로 4%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 받음으로써 2차 협력사는 약 27%, 3차 협력사는 약 49%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자료: 나이스디앤비

〈그림 7〉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 현황(억원, 업체수)

2015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의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 도입비율은 9.9%(=15/151社)로 낮지만,<sup>6)</sup> 모니터링 금액과 참여 협력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7〉 참조).

## V. 대·중소기업의 효율적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5.1 공급망 정보인프라 개선을 통한 효율적 동반성장 추진

경제 양극화란 대내·외 환경변화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속성에 의해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지칭한다(주현, 2007).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확대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높은 실업율과 빈부격차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박영석 외 2인, 2013).

1, 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차 이하 협력업체를 비롯한 공급망 전체로 동반성장 정책의 혜택이 확산되어야 한다.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 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 결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망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협력업체 간 지급결제 모니터링, 결제상품 운용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선결

6) 3장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구매기업이 59.2%, 기본적인 정보만 단순히 관리한다는 구매기업이 26.5%를 차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과제라고 판단된다(〈그림 8〉 참조).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그림 9〉 참조). 단기적으로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 지급기일 분석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체결제상품 보급 이전에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등의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공급망 내에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지급결제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내 기업들의 협력사 구분, 상호 연관 관계, 연계 구조 변화를 정보화하여 공급망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공급망 내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의 경영상태 및 이상징후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결



〈그림 8〉 공급망 관리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방안



〈그림 9〉 공급망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표 11〉 상생결제시스템의 성립 조건

구분	상생결제시스템 해당 요건	
결제형식	현금 또는 현금인정 외매채	60일 이내의 외매채
결제요건	현금지급(증빙 필요)	상환청구권 無
필수사항	2-3차로 확산을 증빙할 모니터링 가능	
	또는 2-3차의 할인 등 금융비용이 대기업 수준의 금리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최상단의 대기업 신용등급을 수직 통합된 모든 공급사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결제, 낮은 할인을, 짧은 만기 등의 금융혜택이 1차 협력업체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 상생결제 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 도입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11〉 참조).

### 5.2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sup>7)</sup>과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급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구매기업(대기업)에서 담당할 경우,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제18조)’ 조항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망 정보인프라의 현실적인 구축 주체인 구매기업(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통해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2차 이하 협력업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로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풀이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급망 내 정보 공유가 기업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목적의 정보화가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적용배제 행위<sup>8)</sup>를 추가하

7)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 18조)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8)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 18조)  
 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 및 지원실적 점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공급망 관리자의 합법적인 지급결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 간 동반성장협약에 '제공가능 정보 및 정보사용 범위'에 대한 상호 동의절차를 활용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의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5.3 불공정거래 방지책 마련과 효율적 관리·감독 주체의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5월에 발표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원

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현금결제 비율 유지 위반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 사례에 해당한다(〈표 12〉 참조).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 구매기업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상단에 위치한 기업들에 의해 과도한 납품대금 인하(cost reduction; CR)와 같은 부당 경영간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급망 정보관리시스템 적용에 따른 자본비용 감소 혜택이 해당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2차 이하 협력업

〈표 12〉 행위 유형별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원사업자 답변, %)

구분	법 위반 행위 유형	제조	용역	건설	전체
대금 관련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0.1	0.3	20.2	1.0
	대금 미지급	0.5	0.3	1.8	0.6
	지연이자 미지급	5.0	2.8	3.1	4.7
	어음할인료 미지급	5.3	1.7	1.2	4.8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4.6	1.7	2.5	4.2
비대금 관련	서면 미발급	15.9	8.2	0.6	14.5
	서면 미보존	10.5	5.7	4.9	9.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8	1.4	8.6	2.0
	부당한 발주 취소	7.7	6.5	4.3	7.4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미통보	1.9	1.4	21.0	12.9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5.1	2.6	3.1	4.8

자료: 2012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동반성장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은 협력업체가 누리되, 장기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득은 구매기업이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정보인프라에 대한 운영은 구매기업(대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급망 정보인프라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구매기업이 전담한다면, 하도급거래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공급기업들은 불공정거래나 부당경쟁간섭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병존(並存)한다. 따라서 공급망 정보인프라의 운영은 구매기업이 담당하더라도, 구매기업 내부적으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의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를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된 관리·감독 주체를 선정하여 공급망 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4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 제반 비용 지원

마지막으로,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 공급망 정보화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상생결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초기 구축비와 운영비용을 지불(현금결제 모니터링 시스템)하거나 매출채권 할인금액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가 지불(현금인정매출채권 시스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의 수가 늘어나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운영비용으

로 인해 공급망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정보화가 진행되면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 출연 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공급망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I. 결론

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가 2차 이하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로 확대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으로서 공급망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개선을 제안하였다.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상생결체시스템 확산,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위험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망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불공정거래 방지

9)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위주의 기존 성과공유제를 다자간 성과공유계약(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을 기반으로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책과 하도급거래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급망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 공급망 정보인프라 환경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공급망 결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경영개선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추후에 공급망 정보인프라가 확산되고 각 기업생태계의 모니터링 정보가 축적된다면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정책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강맹수, 이근희(2012), "기업 규모와 매입 거래 결제 기간에 대한 분위수 회귀 결과의 시사점: 기업 간 동반성장연구 관점에서," **중소기업연구**, 34(4), 75-88.

김세중(2011),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2), 71-97.

박영석, 백 강, 박성호(201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용창출을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도입을 통해서," **KBR(Korea Business Review)**, 17(2), 373-389.

박영석, 이재현, 김대식, 백 강(2013),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26(2), 123-151.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4~2016년)," **보도자료**, 2014.11.17.

송장근, 김광석(2010),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 형성 모델: 자산전용성과 정보공유가 공급사슬 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1(1), 101-121.

송장근, 김광석, 손림수, 이철식(2009), "물류 및 공급사슬 경쟁전략으로서의 정보공유: 공급자 개발계획의 성과형성모델," **한국SCM학회지**, 9(2), 89-98.

이문성, 박상범, 전인우(2011),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협력동인, 경영성과의 상호관련성 분석," **한국물류학회지**, 21(5), 347-371.

주 현(2007), "대·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07년 5월호, 15-25.

중소기업중앙회(20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3.9.30.

중소기업중앙회(2015),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5.5.

중소기업중앙회(2015), "중소제조업 원가절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5.4.

Artz, Kendall W.(1999), "Buyer - Supplier Performance: The Role of Asset Specificity, Reciprocal Investments and Relational Exchang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0(2), 113-126.

Larson, P. D.(1994), "An Empirical Study of Inter-organizational Functional Integration and Total Costs,"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15(1), 153-169.

Premkumar, G., and R. William(1994),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and Empirical Stud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5(2), 75-119.

Sanchez-Rodriguez, C., D. Hemsworth, and A. Martinez-Lorente(2005), "The Effect of Supply Development Initiatives on Purchasing Performance: A Structural Model," *Supply Chain Management*, 10(4), 289-301.

Stank, T. P., S. B. Keller, and P. J. Daugherty (2001), "Supply Chain Collaboration and Logistical Servic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2(1), 29-48.

Zhou, Honggeng, and W. C., Benton Jr.(2007), "Supply Chain Practice and Information Sharing,"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5(6), 1348-1365.

### 〈별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질의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성장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현황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의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질의서는 동반성장에 있어 필요한 대기업의 협력업체 관련 정보 및 결제 모니터링 현황을 중심으로 질의사항이 작성되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금번 토론회 및 연구용 통계자료 산출에만 사용되며 답변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Q1) 귀사의 1차 협력업체(주요 구매기업)의 수는 얼마입니까?**

- 1. 100개 이하      2. 100~200개      3. 200~300개      4. 300~500개
- 5. 500개 이상      6. 기타(            )

**Q1-1) 귀사의 1차 협력업체 중 동반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비중(업체수 기준)은 얼마입니까?**

(\* 1차 협력업체 중 대기업,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외국기업 등 동반성장과 무관한 기업 제외 시 비중)

- 1. 20% 이하      2. 20~40%      3. 40~60%      4. 60~80%
- 5. 80% 이상      6. 파악하기 어려움

**Q2) 귀사의 1차 협력업체(주요 구매기업)에 대한 연간 구매금액은 얼마입니까?**

- 1. 1천억 이하      2. 1천억~2천억      3. 2천억~3천억      4. 3천억~5천억
- 5. 5천억 이상      6. 기타(            )

**Q2-1) 귀사의 1차 협력업체 중 동반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구매비중(결제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 1차 협력업체 중 대기업,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외국기업 등 동반성장과 무관한 기업 제외 시 비중)**

- 1. 20% 이하      2. 20~40%      3. 40~60%      4. 60~80%
- 5. 80% 이상      6. 기타(            )

**Q3) 귀사의 1차 협력업체(주요 구매기업)에 대한 결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 1. 현금결제 비중: 1. 10% 이하    2. 10~20%    3. 20~30%    4. 30~50%    5. 50% 이상
- 2. 현금성 결제(현금 제외) 비중: 1. 10% 이하    2. 10~20%    3. 20~30%    4. 30~50%    5. 50% 이상
- 3. 어음 결제(전자어음 포함) 비중: 1. 10% 이하    2. 10~20%    3. 20~30%    4. 30~50%    5. 50% 이상
- 4. 기타 결제수단 비중: (      %)



4단계: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기본적 정보 외 업종분류 등 상세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위의 보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기재 ( )

**Q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협력업체간 결제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의  
견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협력업체간의 결제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2. 협력업체의 자율이 원칙이나 대기업의 결제 모니터링은 어느 정보 필요하다.
3. 대기업이 협력업체간 결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Q9) 귀사는 1차와 2차 이하 협력업체 간의 결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1.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음
2. 일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결제현황(결제방식, 지급기일 등)을 파악하고 있음
3. 대부분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현황(결제방식, 지급기일 등)을 파악하고 있음
4.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결제 모니터링이 가능함

## Promotion of Shared Growth through the Improvement of Supply Cha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Young S. Park\* · Woosun Hong\*\* · Kang Baek\*\*\*

###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promoting of shared growth between large and SM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supply cha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policy efforts for the shared growth, the channels are reserved to buying companies and dealings with the companies' tier 1 subcontractors whose credit ratings are relatively high. Those subcontractors that belong to tier 2 or below in supply chain still very much at disadvantage in the current framework. This might be caused by the absence of supply cha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rough constructing of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cost of capital at the level of the entire supply chain can be optimized and the stability of supply chain is expected to be improved.

Key Words: Information Infrastructure, Shared Growth, SMEs, Supply Chain, Unfair Transac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First Author

\*\* President, NICE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